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단5315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유병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2/7 지분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6,558,2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558,2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4. C과, C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른 C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행(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9. 3. 10. D에 대한 위촉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D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0. 7. 13. D에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이행(지급)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322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1. 8. 19. 위 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43,560,54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1. 7. 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의 모인 E가 2020. 2. 10. 사망하여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및 F에게 상속되었는데(상속분: 피고 3/7, C 및 F 각 2/7), 위 상속인들은 2020. 3.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9324호로 2020. 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책임재산의 회복 여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소 계속 중 수원지방법원 2021개회15780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2021. 6. 17.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중지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만으로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소송행위를 중지시킬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5항).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거나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 C의 사해의사

상속재산분할협의를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상속과 처분, 채무 변제 등의 모든 문제를 일임받은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후인 2020.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67,011,2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4. 8. 제3자에게 대금 160,000,000원에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C의 상속지분 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26,568,224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60,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67,011,216원) × C 상속지분 2/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즈음인 2021. 5. 18.을 기준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액이 96,844,344원(= 지급보험금 잔액 40,000,000원 + 미수이자 55,956,160원 + 채권보전비용 등 미수금 888,194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이미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므로, 공동담보가액인 26,568,224원이 가액반환 범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26,568,2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26,568,2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

별지

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층 호 75.5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 1754.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 856㎡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610.1분의 45.51

- 이 상 -

